# 수용시설 아동학대 <br> 과거청산에 대한 세계적 흐름 <br>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주윤정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사랑 | 재단법인 진실의 힘

## "타자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타자를 위로한다"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 알폰소 링기스

## 목차

1. 연구목적
2. 세계적 흐름
3. 호주의 사례
4. 한국에의 함의

## 1. 연구목적

##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 대다수 피해생존자가 아동청소년기 폭력을 경험
- 아동학대와 아동대상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점 필요


## 1. 연구목적

## 근대 국가 | 하나의 질서와 공통성 중심으로 인민 통합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재 양식과 생활양식의 모든 변화는 잔인한 강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제, '아두것도 공통점이 없는 이들과의 공동체(링기스, 2013)에 대한 고민이 필요

인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허약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부랑계급들 은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했다."

그람시, 1999: 359 p

## 1. 연구목적

전세계적으로 아동,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에 대한 과거의 폭력과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시설수용 아 동학대에 대한 아일랜드와 호주의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진상규명과 화해를 넘어 피해자 중심적인 진상규명,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변형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구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런 세계적 흐름들이 한국의 2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1979변 상졔뤈 칙항 썬겹


## 이행기 정의의 이행

: 단 하나의 양보 없이
모든 권리가 이행 되어야 함


## 2. 세계적 흐름

1) 인권 의식의 형성과 새로운 문제의 가시화
$\vee$ 가톨릭 신부 성추문 $\rightarrow$ 시설 내의 문제로 확장
$\vee$ 각 사회의 권위주의 청산
$\vee$ 피해자 운동
2) 트라우마 등 심리학적 연구와 라이프 코스
3) 정의의 언어의 확장
4) 국가별 다양성


## 홀로코스트와 장애인




아동기 폭력 / 트라우마와 라이프코스

## Duration of adversity

Number of adversities and interaction between them


Type of adversity

Developmental status and critical period timing

# Care environment mediates stress 

 - Prenatal maternal stress, depression - Postnatal caregiver unavailability/ absence (mental illness, substance abuse, death)- Depriving environments
(eg institutional care) - Child abuse or neglect

Sensitive period effects
Specific to developmental
Specific to developmental functions/domains


6-12 months HPA axis (SHRP)


15 months Language

- Reduced volume of key regions
- Neurotransmitter changes
- Altered functional activity, tract connectivity


Neurodevelopmental disruption

Increased risk of:

- Cognitive deficits
- Disease
- Psychopathology
- Social problems, (unemployment, incarceration)
https://www.bmj.com/content/371/bmj.m3048

| 기관명 | 활동 기간 | 관할 | 조사범위 | 수용시설 종류 | 예산 |
| :---: | :---: | :---: | :---: | :---: | :---: |
| Commission to Inquire into Child Abuse (The Ryan Commission) | 00-09 | 아일랜드 | 모든 폭력, 방임 | 거주, 돌봄시설 Institutional residential c are settings 아동학대, 미혼모, 직업학교, 보육시설 | 1억 유로 약 1,340억원 |
| Country Commission into Abuse and Neglect in Residential Homes in Bergen | 01-03 | 베르겐, 노르웨이 | -모든 폭력, 방임 <br> 2차세계대전시기 독일군 자녀, 소수민족 <br> -지자체의 조사가 활성화되어 있 음 | 거주, 돌봄 시설 |  |
| Swedish Commission to Inquire into Child Abuse and Neglect in Institutions and Foster Homes | 06-11 | 스웨덴 | 모든 폭력, 방임 | 거주, 돌봄 시설 |  |
| Godhavn Inquiry | 10-11 | 덴마크 | 모든 폭력, 의학실험 | 거주, 돌봄시설 |  |
| Historical Institutional Abuse Inquiry | 14-17 | 북부 아일랜드 | 모든 폭력, 방임 | 학교를 제외한 거주, 돌봄 시설 |  |
|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 | 13-17 | 호주 | 아동성폭력, 관련한 문제 성폭력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 | 모든 시설 <br> *조사대상 기간 범위(호주 국가설립이후-2018) | 5억 호주달러 약 4,260억원 |
| Scottish Child Abuse Inquiry | 15- | 스코틀랜드 | 물리적, 성적 폭력, 관련된 심리 적, 감정적 학대 | 위탁기관, 학교, 구금시설 포함한 거주, 공동생활 수용 시설 | $\begin{aligned} & \text { 3,500만 파운드 } \\ & \text { 약 531억원 } \end{aligned}$ |
| Independent Jersey Care Inquiry | 13-17 | 저지시, 영국 | 모든 폭력, 방임 | 위탁기관 포함한 거주시설 |  |
|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Abuse | 15- | 잉글랜드, 웨일즈 | 성폭력 | 모든 시설 | 매년 2천만 파운드 약 303억원 |

## Apologies and the Legacy of Abuse of Children in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Johanna Sköld
and
Shurlee Swain

## Part I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Legacy of Child Welfare

## 1 Apology Politics: Transnational Features

 Johanna Sköld2 Contested Memories: Caring about the Past - or Past Caring?
Jacqueline Z. Wilson and Frank Golding
3_Children's Agency: The Struggles of the Powerless Kjersti Ericsson

4 Trials and Contestations: Ireland's Ryan Commission Carol Brennan

5-Contextualizing Reparations Politics Malin Arvidsson

6 Why Sexual Abuse? Why Now? Shurlee Swain

## Part II National Particularities

7. Denmark: The Godhavn Inquiry

Maria Rytter and Jacob Knage Rasmussen
8 Sexual Abuse in Dutch Child Protection, 1945-2010
Jeroen J.H. Dekker and Hans Grietens
9. The Politics of Apology: The Norwegian Case

Eva Simonsen and Karen-Sofie Pettersen
10 Scotland: Historic Abuse in Care and Human Rights Andrew Kendrick, Moyra Hawthorn, Samina Karim and Julie Shaw

11 Canadian Inquiries Stumble Towards Redress Gerald Cradock

## Part III Challenges for Professionals

12 The Role and Importance of History.

## Nell Musgrove

13-Truth-Seeking in Oral Testimonies and Archives Johanna Sköld and Åsa Jensen

14_Dilemmas of Care: Social Work and Historic Abuse Andrew Kendrick and Moyra Hawthorn

15-Transitional Justice Workers and Vicarious Trauma

##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설립배경

$\vee$ 호주 전역에서 종교 시설, 학교 등 시설의 성격과 관계 없이 시설 아동 성폭력 사건이 전세대에 걸쳐 발생
$\vee$ 의회, 인권위원회(전신), 각 주립 위원회 조사 진행
$\vee$ 가톨릭 교구 내 아동 성폭력 사건

## 모멘팀 형성

v Julia Guillard 총리의 '왕립 위원회' 설치 권고 | 2012.11.

##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66

최근 알려진 아동 성폭력 혐의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는 어떤 어린 이도 겪어서는 안될 간교하고 사악한 행위입니다. 이에 관여한 모든 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들의 목 소리가 들릴 권리,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조사될 권리를 가집니다. 저는 왕립위원회야말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 선을 다해야 합니다. (...) 호주는 반드시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시설 내에 숨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미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위원회 구성



규모

$$
\begin{aligned}
& \text { 매년 평균 300여명 } \\
& \text { 5년간 총 700명 근무 }
\end{aligned}
$$

## 위원 소개

The Hon. Justice Peter McClellan AM | NSW 상소법원 판사 The Hon. Justice Jennifer Coate | 가정법원 판사
Mr . Bob Atkinson AO APM | 전 경찰청장
Mr. Robert Fitzgerald AM | 정부 생산성위원회 위원장
Professor Helen Milroy | 아동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 Mr. Andrew Murray | 전직 서호주 상원의원.

예산 5년간 약 352.3백만 호주달러
약 3,000 억원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조사 권한 Terms of Reference

일반적 혹은 특정한 경우,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적젇한 행위를 넓게 포함함. '폭력'에 대한 포괄적 해석 가능
Institutional responses to allegations and incidents of child sexual abuse and related matter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혐의 및 사건에 대한 시설 대응.

- 시설 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항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 시설 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혐의, 사건 및 위험성에 대한 정보나 보고를 격려하거나 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 아동 성폭력 혐의 및 사건 보고, 조사 및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 의 과제
-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및 관련된 문제가 과거 미쳤거나 혹은 미래에 작용할 효과를 주장하거나 혹은 완화 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시설의 배보상 제공, 수사/기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건 이관 등 포 함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주요 고려사항

- 관련된 이들의 증언 수집의 중요성, 동시에 경험자의 트라우마,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인식
- 개별사건 조사 중요시 하되, 사건 이관의 가능성, 제도적 문제 조사와 권고의 필요성 인식
- 시설 관계자의 타당하고 적절한 반응 도모
- 입법, 정책, 시스템 변화를 위한 완결성 있는 권고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진실규명 조사 방법

## 개별조사

- 8,013여 건의 개별조사, 6,876명의 생존자 증언
- 적어도 1 명의 위원 참여
- Trauma-informed approach
- 개별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등


## 서명 참여

- 992건 접수


## 공청회



- 57건의 공청회, 67건의 비공개 공청회 (총 444일)
- 총 1,320 명 피해자 증언, 134 개 시설 증언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위원회 조사 결과

66

## 중간 보고서

-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 2015.8.
- 배보상과 민사소송 National Redress Scheme | 20187.
- 형법상 정의 구현|2017.8.


## 최종 보고서

- 2017.12.15. 제출
- 17권의 보고서, 409개의 권고


## 국가 사과

- 2018.10.22. 호주 수상 Scott Morisson
- 피해자, 생존자를 위한 국가의 공식 사과


##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1권 | 최종 보고서 요약,409개 권고 전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최종 정보 통계. 최종보고서 소개하고 위원회의 설립, 범위 작용 설명
<시설 내 아동 성폭력 이해>
2권 | 원인과 성격; 시설 내 아동 성폭력 원인과 성격(권고 1가).
3권 | 영향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이 생존자, 가족, 친구,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
4권 | 아동 성폭력 확인과 폭록 생존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위원회가 배운 것
5권 | 개별 조사에서 피해자가 위원에게 증언한 아동 성폭력
<아동보호시설>
6권 | 아동이 안전한 시설을 만드는 밥: 국가적 아동 성폭력 예방 정책의 필요성, 아동 안전 기준 및 이행방법 제안. (24개 권고)
7권 | 시설 대응 및 보고 방식 개선 아동 성폭력 관련항의 및 소송, 정부 외 기관으로 사건 보고 하는 방법(12개 권고).
8권 |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기록 확보 및 보존, 정보 공유 검토(23개 권고).
<지원과치료(rueatment)>
9권 | 애드보커시, 지원 및치료 서비스(9개 권고)
10 권 | 유해한 성적 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시설 대응 검토(개 권고)
<특정시설>
11권 | 역사적인 생활 시설(residential instiution); 1990년이전의 거주시설 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생존자 경험과 시설 대응
12권 | 현재의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 (22개 권고)
13권 | 학교 (8개 권고)
14권 | 체육, 레저, 예술, 문화; 공동체, 취미 그룹 (4개 권고)
15권 | 현재 구금 시설 환경 (15개 권고)
16 권 | 종교 기관 (58개 권고)
17 권 | 위원회 너머; 위원회의 영향과 유산, 위원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6개 권고)

##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 위원회 조사 결과

## 66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린이들을 보호하 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동 피해자, 생존자들이 겪는 극심 하고 계속되는 고통과 괴로움, 트라우마에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린이로서 당신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돌봄에 책임 있는 바로 그 사람과 기관이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물리적, 정신적 학대에 괴로워했고, 끔찍한 성범죄를 겪어냈습니다.
(...) 모든 호주 어린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 는 이 사과의 의미를 진실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시설 내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과거의 피해 사실, 그리고 현재의 피해, 미래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회복/배보상(redress)를 피해자, 가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을 겪은 이의 신청을 기본으로 함
- 정부 공무원이 피해자 신청 과정과 Redress scheme 담당
- Redress 자체 지원 서비스 무상 지원 가능
- 책임 있는 시설 및 지자체 가입

Application progress as at 12 February 2021


- 총 9,506건 신청, 이중 4,842건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급 완료
- 2021.2.12. 현재 총 404.4백만 호주달러(약 3,500억 6천만원) 지원
- 62,500 개 장소에서 학교, 교회, 자선단체 등 450 개 시설이 가입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 Redress 원칙

- Survivor-focused approach
- No Wrong Door Policy
-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의 본질 및 효력과 피해자에 대한 문화적 요구사항에 맞추 합당하게 제안, 평가 및 제공되어야 함
- 가장 약하고 힘 없는 피해자의 필요를 기준으로 함


## Redress 내용

## 직접적•개별적 응답

- 시설 관계자의 개별 사과
- 시설이 피해자 사건, 사건이 미친 영향을 인지 한다는 사실 확인
- 재발방지 위한 이행 사항과 향후 계획 포함


## 상담 및 심리적 돌봄

- 피해자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청인 요구나 필요에 따른 상담과 심리적 돌봄 제공
- 복합 트라우마 전문가 진행 피해자 가족 참여 가능


## Redress 내용

## 금전적 지원

-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

| 기준 | 수치 | 나응 |
| :---: | :---: | :---: |
| 폭력의 심각성 | 1~40 | - 폭력의 내용(삽입 여부, 폭력 사용, 빈도수,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밀접도) <br> - 당시 아동의 나이 <br> - 가해자 숫자 등 |
| 폭력의 효과 | 1~40 | - 사건 이후 죄책감, 자존감 하락 등 피해자가 겪은 내면적 변화 <br> - 타인과 관계 및 친밀도 형성의 어려움, 신뢰 구축의 어려움 <br> - 우울증, 분노, PTSD 증상 등 <br> - 기타: 시설 특이성(시설의 피해사실 인정 거부, 가해자 비호에 대한 증거 확보 등) |
| 추가 요소 | 1~20 | - 지자체 지원 여부 <br> - 기타 폭력, 학대 사실의 여부 <br> - 시설 폐쇄 <br> - 관련해 발생한 장애 등 |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 Redress 내용

## 금전적 지원

-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
- 최소 1 만 AUD (약 850만원)~최대 $2($

Scheme participant information

| Assessment value | Proportion of <br> participants <br> $(\%)$ | Cumulative <br> proportion <br> $(\%)$ | Hypothetical <br> payment level (\$) |
| :--- | :--- | :--- | :--- |
| $\mathbf{0 - 3 0}$ | 7 | 7 | 10,000 |
| $31-35$ | 5 | 11 | 13,000 |
| $36-40$ | 6 | 17 | 18,000 |
| $41-45$ | 9 | 27 | 23,000 |
| $46-50$ | 9 | 35 | 30,000 |
| $51-55$ | 9 | 45 | 39,000 |
| $56-60$ | 9 | 54 | 49,000 |
| $61-65$ | 9 | 63 | 63,000 |
| $66-70$ | 9 | 73 | 79,000 |
| $71-75$ | 10 | 83 | 100,000 |
| $76-80$ | 8 | 91 | 126,000 |
| $81-85$ | 6 | 96 | 159,000 |
| $86+$ | 4 | 100 | 200,000 |
| TOTAL / AVERAGE | 100 |  | 65,000 |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 Redress 내용

## 금전적 지원

-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
- 최소 1 만 $\operatorname{AUD}$ (약 850만원)~최대 20만 $\operatorname{AUD}$ (약 1억 8천만원), 평균 6만 5천 AUD (약 5,500만원)
- National Redress Scheme의 금전적 지원은 피해자 고통에 $100 \%$ 등가하는 배상이 아님
- 완전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가능


##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 Redress 내용

- Redress schem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신청인이 기존에 혹은 별도로 받는 사회복지 등 지원서비스와 상충하지 않음
- 재원 마련: 책임 있는 시설, 시설 등이 다수 위치한 지자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탁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구성.
- 시설 내 아동 성폭력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의 Redress scheme 가입 장려 e.g. 정부 지원금 제도 등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 Redress 신청

-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한정
- 신청인에게 가해한 시설이 Redress Scheme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접근성 높이기 위한 신청 지원 상시 운영 및 아동권 시민단체와 연계
- 신청 후 진행 속도
12 개월 내 지원: $46 \% \quad$ 9개월 내 지원: $27 \% \quad 6$ 개월 내 지원: $10 \%$
- 77\%가 Redress 전체 지원, 54\%가 상담 및 심리적 돌봄만 수용, 45\%가 시설의 사과 요청


## Redress 예산

- 왕립위원회 예상 National Redress Scheme 매년 예산

- National Redress Scheme 2019-20년도 실제 지출


## 4. 호주 사례의 함의:

##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개별 피해자 조사에 충실함
- 개별 피해사실 중심의 조사는 지원 및 재발방지 정책 마련에 단단한 기틀이 됨
- 개별적 사실을 밝혀내며 총체적 진실로 가는 방식은 사회전반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 입법에 힘이 됨


## 4. 호주 사례의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개별 피해자 조사에 충실함
- 책임 있는 가해 시설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포함
- 가해자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방식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사건 e.g.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기관 외 원장의 가족, 관련 재단 등 가해자, 가해시설 존재

- 개별 사건의 특이성을 반영한 주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


## 4. 호주 사례의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개별 피해자 조사에 충실함
- 책임 있는 가해 시설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포함
-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피해자 지원 및 구제 방안
- 금전적 손해배상만이 피해자 구제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National Redress Scheme 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
- 다른 지원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함 $\rightarrow$ 피해자 개벌 상항에 대한 섬세한 조사가 있었기에 가능


## 4. 호주 사례의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복지원 사건의 핵심은 몇몇 관계인들의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제 정한 법에 의해 공권력을 부여받은 일이 없는 사설기관들이 어떻게 가난하 고 의탁할 곳이 없을망정 분명히 노예가 아닌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시민들 임에 틀림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정부기관의 비호와 지원속에서 짓밟아 왔으 며, 피수용자들의 죽음을 각오한 탈출의 시도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민 들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私益을 위해 이용되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존재함 을 앝지도 돗했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관계된 특정인들을 지탄하는데 그 칠 일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같이 뼈저린 수치심과 공표를 느끼며 반성할 일이다. 이인호, 조선일보, 1987/4/4/, 복지원 문제의 핵심


